

대법원 2021. 7. 15 선고 2021다229144 판결 [공사대금 청구]

---

### 재판경과

대법원 2021. 7. 15 선고 2021다229144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21. 4. 9 선고 2020나54791 판결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. 1. 16 선고 2019가소9167 판결

### 전문

원고, 상고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김용명, 양진영, 이창엽,  
최화진

피고, 피상고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건

판결 선고 2021. 7. 15.

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. 4. 9. 선고 2020나54791 판결

### 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이 유

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 대법관 김재형, 대법관 안철상, 주 심    대법관 노정희, 대법관 이흥구